

행정명령

뉴욕주 비상 사태 선포

2025년 2월 14일 이후 계속되는 겨울 폭풍 시스템은 앨러가니, 이리, 카타라우구스, 쇼토쿠아, 제네시, 허키머, 제퍼슨, 루이스, 오스위고, 와이오밍 주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및 인접 카운티 내의 대중 교통, 공공 서비스, 공중 보건 및 공공 안전 시스템에 임박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폭풍으로 인해 상당한 눈, 얼음, 강풍, 영하의 기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도로 폐쇄, 여행 중단, 광범위한 정전, 공공 및 사유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에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일련의 겨울 폭풍을 경험하여 주 전역에 영분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쟁기질 및 개간 노력이 복잡해지고 악화되어 주 및 지방 도로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부법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방 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임박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주 전역에 걸쳐 주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행정 명령은 2025년 3월 16일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본인은 행정법 제2조 B조 29항에 따라 주 종합 비상 관리 계획의 이행을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 주정부 기관 및 미국 적십자사에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지방 정부 및 개인이 이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도록 지원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2025년 2월 14일부터 부여합니다.

추가로, 이 선포는 49 CFR 395.2장 및 395.5장에 따라 구제를 제공하는 49 CFR 390.23(b) 요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러한 연방 자동차 운송 업체 근무 시간 규정 완화는 소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승무원이 중요한 도로를 청소하고 뉴욕주 전역으로 유틸리티 전력 복구 대원의 이동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법 2-B조 29-a항에 따라 법령, 현지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법령, 현지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재난 비상 사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지, 방해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본 행정명령 시행일로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 다음 법률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수정합니다:

- 주 재정법 제97-G조(피해를 입은 지방 정부, 개인 및 기타 비국가 단체가 재난 비상 사태에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식품, 물품, 서비스 및 장비를 구매하거나 다양한 중앙 집중식 서비스를 제공 또는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 주 재정법 제112조(주 헌법 제5조 제1항과 일치하는 범위 내, 그리고 주 계약에 추가 작업, 부지 및 시간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 암염 또는 염화나트륨 공급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제162-A조
- 상품, 용역,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주 재정법 조항 163 및 경제개발법 조항 4-C.
- 일반 지방 자치법(General Municipal Law) 제5-A조(표준 통지 및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물품, 서비스(건설 포함) 및 장비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 공공 건물법 제9조 및 경제 개발법 제4-C조(150만 달러를 긴급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 긴급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법 제38조(1), (2), (3) 항 및
- 차량 및 교통법 375, 385 및 401항(비상 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관할 구역에 유효하게 등록된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 장비 및 치수 요구 사항의 면제가 필요한 범위 내)

또한 본인은 본 행정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법률을 일시적으로 수정합니다.

도로, 고속도로 및 거리에서 교통 및 차량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부법 조항 24, 고속도로법 조항 104 및 346, 차량교통법 조항 1602, 1630, 1640, 1650 및 1660, 운송법 조항 14(16), 빌리지법 조항 6-602 및 17-1706, 일반도시법 조항 20(32), 2급도시법 조항 91, 그리고 뉴욕주 규정집 타이틀 21의 섹션 107.1.

2025년 2월 14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이
직접 주정부 날인을 통해
선언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